

「재산영농조합법인」 농가부채대책자금채무보증동의안

검 토 보 고 서

1. 회 부 경 위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0.5.24. 평창군수(농업경영과장)

나. 회 부 일 자 : 2000.5.29

다. 상 정 일 자 : 2000.5.29 제76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제2차 본회의

2. 제 안 이 유

- 재산영농조합 법인의 「성장작목 시범단지 조성사업」 용자금 대출액 20억원에 대한 평창군의 채무보증액중 2000.6.30일 상환도래된 원금을 「농가부채 및 경영안정대책」 자금에서 1년간 자금 대환하는 것임

3. 주 요 내 용

정부의 「농가부채 및 경영안정 대책」 금융농업중기 대출금 206,106천원에 대하여 평창군수를 채무보증하여 대출하고 그 대출금으로 군수가 채무보증한 20억원중 2000년도 상환액 206,106천원을 상환하기 위함.

4. 검 토 결 과

- 먼저 재산영농조합법인의 채무보증 및 지원내역을 살펴보면
- 성장작목 투자사업비는 총 50억원으로서 이중 국비가 21억원 도비 11억 6천 4백만원이 간이집하장, 농산물포장센터, 공동퇴비 제조장, 교육장 각 1동에 투자되었고

시범단지 조성사업 50억원중 융자액 20억원에 대하여
평창군수가 '92.6.29 평창군의회 의결을 거쳐 동년 7.14일 채무
보증하였음.

- 채무보증은 정부의 「농가부채 및 경영안정대책」에 대한
대출건이며 본 자금을 대출받아 성장작목 시범단지 2000년도
상환액 206,106천원을 상환하기 위한 대환(돌려메우기)에
사용되는 것임.
- 평창군수는 기존의 채무보증 사항과 변동이 없다고 하나
결과적으로 경영의 어려움으로 2000년도 상환도래액
206,106천원을 상환하지 못하는 것임.
-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재산영농조합법인을 채무보증과
같은 방법으로 위기를 관리할 것이 아니라 평창군에서 경영
컨설팅을 통하여 근본적으로 경영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여 정상
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.
- 본건에 대하여 평창군수 및 재산영농조합법인의 상환의지와
대책을 추궁하여 향후 예산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
대안제시가 필요함.